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9. 29.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안 제6조)
-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안 제7조)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8조)
- 내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안 제9조)

○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12조, 제13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안 제14조, 제15조)
- 위원회 운영 및 위원의 위촉(안 제16조, 제17조)

○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안 제18조, 제19조)
- 환경조성사업 선정 및 대상사업 보조금 지급(안 제20조, 제21조)

3. 검토의견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 본조례는 2013년10월31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안산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을 그동안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공익신고 대상의 확대와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3차례 개정함에 따라 그동안 미반영된 부분을 보완하고 조례로 제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 우리사회의 조직문화로 내부고발이 조직의 이익에 반하는 배신행위로 간주되고 신고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제19조)이나 환경조성사업 선정(안 제20조)을 통하여 기관 및 단체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나,

○ 다만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우리시의 독특한(산업적)문화를 반영하는 사전적인 단계에 충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 등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안행부)」에 따라 통보된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등 현장행정 분야의 지역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

○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5개 상임위→4개 상임위)에 따른 의회사무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함. (안 제2조)

- 총 수 : 1,989명 → 2,009명 (20명 증)
  · 집행기관 : 1,957명 → 1,979명 (22명 증)
  · 의회사무기구 : 32명 → 30명 (2명 감)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 종류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정원	현 행	1,989	1	1,970	3	4	11
	개정안	2,009	1	1,990	3	4	11
증 감		+20	-	+20	-	-	-

- 직급별 정원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2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전 문 경력관	5급 상당	6급상당 이 하		
정원	현 행	1,989	1	1	1	15	110	1,842	1	1	2	4	11
	개정안	2,009	1	1	1	15	110	1,862	1	1	2	4	11
증 감		+20	-	-	-	-	-	+20	-	-	-	-	-

3.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개수 조정(5개⇒4개)에 따른 의회사무국 정원을 조정(32명⇒30명)하고,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분야10명과 생활안전등분야에 10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 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조례 중 대외직명 등 일괄 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2017. 7. 1. 대외직명 변경(계장→팀장) 시행에 따른 이전 대외직명 인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및 혼란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외직명 "계장"을 "팀장"으로, "주사"를 "팀장"으로 변경함. (안 제1조부터 안 제57조까지)

3. 검토의견

○ 그동안 대외적으로 호명하여온 6급이하의 직명을 2017년6월 자체 설문조사를 통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안산시가 운용하는 모든 자치법규에 일괄정비를 통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와 관련 「자연재해대책법」(2014. 12. 30.)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11. 30.)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시설물의 지붕까지 제설·제빙 범위 확대

○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설·제빙 작업시기 구체화

○ 제설·제빙 작업 중지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일몰, 폭풍, 이상한파 시에는 제설제빙 작업 중지

○ 제설·제빙 작업의 방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제설·제빙 작업방법 구체화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의무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 것으로

○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처럼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4년 12월 제설범위를 지붕까지 확대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 금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과된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에 건축물의 지붕을 추가하는 내용과 건축물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 범위 등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내용이나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지역 현실에 맞는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도벌칙조항 등 강제성이 없어, 본 조례의 목적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 따라서, 소관부서에서는 제설 취약 건축물 담당책임제 운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 집앞 눈치우기' 등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24.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안정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차원의 민관협력활동관계를 원활하게 하여,

○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이 가능하도록 안산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위탁내용

○ 위원회의 기능, 운영방안 등에 대한 법령 제정(안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에 대한 법령 제정(안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평시·재난 발생시 활동에 대한 법령 제정(안 제6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4. 2. 7.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따라 시·도 또는 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민관협력위원회)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민관 재난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평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대응 활동을 위한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구성시 의회의원을 위촉할 것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위촉직 위원수를 명기하여 줄 것을 제안함.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개정으로 단독·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이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재난취약계층의 정의 (안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대상 및 정의 (안 제3조)
-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원

3.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9조2항6호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및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방시설로서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지역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기초소방시설인 만큼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지원 확대가 시급한 사항이므로 조례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2조(정의)에 있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보다는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로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 함.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7.12.31. 종료가 예정되었으나,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민원콜센터 상담사들이 포함되어 진행중이어서,

○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정규직 전환 완료시점까지 기간연장(재계약)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고용노동부-1058(2017.6.2.) 공공부문 소속외 근로자 정규직화 협조

○ 고용노동부-1715(2017.7.21.)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송부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 주요내용

○ 연장기간 : 2018. 1. 1. ~ 2020. 12. 31. (3년)

단,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면 위 수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종료함.

○ 수탁기관 : 효성ITX(주)

○ 운영인원 : 26명 (매니저1, 강사1, 팀장2, 상담사 22명)

○ 결정방법 : 민간위탁 재계약(기간연장) 심의위원회 평가

○ 소요예산 : 3,245,389,000원 (3년)

(단위 : 천원)

구분	계	기본운영비	휴일근무수당	비고
2018년	**1,044,588**	946,096	98,492	15.4% 증가 (2017년 905,070천원)
2019년	**1,082,734**	982,318	100,416	3.7% 증가
2020년	**1,118,067**	1,015,727	102,340	3.1% 증가

○ 근무방법 및 운영시간 : 365일

구분	평일	토·공휴일	비고
탄력근무	08:00~17:00	09:00~18:00	365일 근무
정상근무	09:00~18:00		
탄력근무	10:00~19:00		

○ **위탁사무 범위**

- 전화 · SNS · 문자 등을 통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상담사 인력관리, 교육 및 상담 D/B 관리
- 효과적인 콜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 각종 상담결과 보고 등 체계적, 주기적 보고
- 콜센터 진단 및 개선 컨설팅 등
- 협의에 의한 각종 리서치 업무 수행 등

○ **재계약 결정기준**

-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
- 평가기준 : 안산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총무과-16293/5.31)에 의거함.
- 평가점수 '우수(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결정

□ **필요성**

○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통한 시민만족 증진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콜센터 운영경험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단체)에 위탁운영이 필요함.**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안산시 민원콜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단체)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민원콜센터의 특성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통한 시민만족 증진이 주된 목표인 만큼 타 시군과의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하여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수탁기관의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함.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2017. 7. 26.)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주요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

○ 이에 따라 이전(以前) 정부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일괄정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정비하여 주민혼란과 업무저해를 예방코자 함.

2. 주요내용

○ 우리시 조례내 이전(以前)정부부처명칭 변경

※ 안산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정비 (정비건수 23건)

3. 검토의견

○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17.7.26.)에 따른 주요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이전(以前) 정부부처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시 조례를 일괄정비 조례 제정·시행을 통해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방학기간 중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행정체험 연수의 기회를 제공

○ 학비 부담, 취업 준비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 한 학생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학생 행정체험 대상 제외자 중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수시 행정체험연수에 한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 및 안 제3조의2)**

○ **행정체험 연수 운영시기를 당초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연 중 수시운영으로 변경 (안 제3조)**

○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서류를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로 변경(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는 대학생 행정체험 대상 제외자중 휴학생에게 방학기간을 제외한 수시 행정체험연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24.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

2. 주요내용

○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10조).동 조례 폐지

3. 검토의견

○ 본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담긴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2년 구성된 후 5년이 경과되어 2017년 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조례」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에 한해 재계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운영 현황

대 지 면 적	1,000㎡
건 축 면 적	488.56㎡
연 면 적	974.69㎡
운영주체 및 관리	민주노총 안산지부(의장 임형주)
위 탁 기 간	2015. 1. 1. ~ 2017. 12. 31.(3년)
직 원 현 황	3명(관장 1명, 기획팀장 1명, 운영팀장 1명)

○ 위탁내용

· 시 설 명 :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112 (원시동)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 재위탁기간 : 3년(2018. 1. 1. ~ 2020. 12. 31.)

· 시설규모 : 연면적 947.69㎡(지상3층/지하1층)

· 위탁사무 :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운영 및 관련 사무 일체

· 운영인력 및 예산 : 3명 263,390천원(시비 100%)
※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위탁방법 : 재계약(1회에 한하여 재계약)

○ 민간위탁 필요성

·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복지관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 필요

□ 관계법령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제4조

○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예산수반사항 : 2018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263,390천원)

3. 검토의견

○ 본 보고안은 안산스마트허브의 배후도시로 성장한 안산시에 상존하는 안산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위탁기간이 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근로자복지시설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보고의 건으로,

○ 그동안 운영관리 및 성과를 토대로 향후 좀더 나은 운영을 주문하여 줄 것을 제안함.

○ **안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 2015년도 실적

▶프로그램 운영 : 4개 과정, 10개 강좌, 이용자 2,722명

- 노동자 교양과정 - 건강과정- 취미과정- 악기과정

▶하하센터 : 3개 과정, 이용자 707명

- 신활법 - 생활한방코칭 - 심리상담

· 총 7과정 이용자 3,429명

➲ 2016년도 실적(상반기)

▶프로그램 운영 : 4개 과정, 13개 강좌, 이용자 1,881명

- 노동자 교양과정 - 건강과정 - 취미과정 - 악기과정

▶하하센터 : 3개 과정, 이용자 383 명

- 신활법 - 생활한방코칭 - 심리상담

· 총 7과정 이용자 2,264명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안산시 일자리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일자리센터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17. 12. 31. 만료 예정임

○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인·구직상담, 알선, 취업지원 등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시 설 명 : 안산시 일자리센터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기간 : 2017. 1. 1. ~ 2026. 12. 31.(10년)

⇒ 제234회 안산시의회에서 10년 동의는 기 받음

※ 재위탁기간 : 2018. 1. 1. ~ 2019. 12. 31. (2년)

· 소 재 지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민원동 2층

○ **운영현황**

· 설치시기 : 2010. 3. 1.

· 위탁업체 : 스탭스(주)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1년)

· 주요사업 : 안산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배치 및 운영

· 운영인력 : 36명

- 일자리센터 6명, 동 25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명, 특성화고 3명

· 예　　산 : 1,100,000천원(2017년)

○ **필요성**

· 전국적으로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 추진함으로써 전문업체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취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 매칭의 우월한 노하우를 채택 실행할 수 있으며, 심각한 취업난 해소와 고용률 증대 효과 기대

·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 분석 및 구인업체에 알맞은 적재적소의 구직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률 감소효과 기대

□ **예산수반사항 : 2018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1,334,600천원)**

3. 검토의견

○ 본 보고안은 2010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한 사항으로 우리시가 반월시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성장의 기반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여 왔으며 이번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당초 1년간 위탁하여 오던 기간을 2년으로 추진하여 일자리 매칭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그동안 위탁 운영하여 온 관리 및 성과를 토대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가 수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제안함.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도매시장법인 등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개설자 업무규정(우리시는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지시에 따른 조례개정

2. 주요내용

○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규제 관련 조례 개정(안 제8조제5항).

- (현행) "5년" → (변경) "5년 이상 10년 이하"

○ 중도매업 허가기간 규제 관련 조례 개정(안 제28조제3항).

- (현행) 법인 "5년" → (변경) "5년 이상 10년 이하"
- (현행) 개인 "3년" → (변경) "3년 이상 10년 이하"

○ 조례 내 인용조항 불부합에 따른 개정(안 제29조제2항제1호).

- (현행) "제91조" → (변경) "제85조"

○ 법령부적합 자치법규의 용어 정비(안 제43조제1항제3호).

- "금치산자" 를 "피성년후견인" 으로, "한정치산자" 를 "피한정후견인" 으로 변경

○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표준하역비의 규격출하품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 으로 지정(안 제75조제2항).

○ 별지 제6호(조례 제28조제1항 관련), 제15호(조례 제50조제1항 관련)

서식 변경

- "생년월일" 을 "주민등록번호" 로 변경

3. 검토의견

○ 본개정 조례안은 2012. 2. 22.일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제25조(중도매업의허가)를 개정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을 당초에 5년에서 "5년이상 10년이하" 로 변경하고 중도매업 허가기간 역시 법인 5년에서 "5년이상 10년이하" 로 개인인 경우 3년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과 영업활동을 일부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도매시장 법인 등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의 형태를 개설 자업무규정(우리시는조례)에 명확히 규정 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지시에 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민법」이 2013. 7. 1. 개정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되어 개정하는 사항이며 종전 규정에 의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민법 개정에 따라 지도위원 결격사유 중 종전 한정치산·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나 경과규정이 없어 향후 법적 공백의 발생이 예상되어 부칙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3조(지도위원 결격 사유)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

① 금치산, 한정치산자가 개정민법 시행 이후 성년후견·한정후견 심판을 받거나

②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2018.7.1.)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상실 됨

- 개정민법 시행(2013.7.1.) 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중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는 2018.7.1. 이전까지 결격사유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3. 검토의견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 「민법」이 2013. 7. 1 개정되면서 종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용어를 폐지하고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으나 종전 규정에 의거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서,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검 토 보 고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0. 11. 제출되어 10. 13.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3개 부서 4개 사업(출연금 4,267,114천원)에 대하여 출연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금 현황(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적 요	부서명	출 연 금				비고
		계	인건비	사업비	기타	
기획행정위원회	4개 사업	4,267,144	1,415,251	2,150,632	701,261	
1.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세 정 과	67,144	0	0	67,144	
2.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지역경제과	1,000,000	0	1,000,000	0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교육청소년과	2,020,000	1,327,022	105,000	587,978	
4.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교육청소년과	1,180,000	88,229	1,045,632	46,139	

○ 세부내용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1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 기금

1. 운영 개요

(1) 지원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1조

(2) 필 요 성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그 밖에 지방세 발전과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

2. 출연기관 일반 현황

(1) 연혁 및 주요사업

○ 연혁

· 2011.04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 2012.01 '지방세포럼' 창간

· 2014.02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창설

· 2015.01 대외협력센터, OLTA센터 신설

· 2015.05 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신설

· 2017.01 특례연구센터, 지방세교육센터 신설

○ 주요사업 :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OLTA)운영, 지방재정세제 통계 DB 구축,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홍보, 지방세 구제 업무 지원 사업

(2) 인력 및 조직

○ 연구기획본부와 경영지원본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연구조직을 세정연구실, 세제연구실 두 실 체제로 운영하면서 지방세제 및 지방세정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3. 출연금 현황

(1)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의회사무국 이향례 2017-10-31 14:22

출연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 고
67,144	전전년도('16년)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447,628,322천원×0.015%	한국지방세연구원	※ 예산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67,144	60,205	6,939	
기 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67,144	60,205	6,939	

(3) 출연금 증액 사유 (전년 대비) (단위 : 천원)

연도	출연금	전전년도 보통세액	산출내역	비고
2018년	67,144	447,628,322('16년)	447,628,322×0.015%	전년대비 출연금 6,939천원 증액사유는 산출기초가 되는 보통세액이 '15년 대비 '16년 46,262,985천원 증액
2017년	60,205	401,365,337('15년)	401,365,337×0.015%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1만분의 1.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2호)

(4) 증액 출연 사업내역

○ 지방세에 대한 연구·홍보 및 담당공무원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

2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1. 운영 개요

(1) 지원근거 :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2) 필 요 성 :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함

2. 출연기관 일반 현황

(1) 연혁 및 주요사업

○ 설 립 일 : 1996. 3. 19.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주요사업 : 신용보증, 경기도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

(2) 인력 및 조직

○ 인 력 : 김병기이사장 등 267명

○ 조 직 : 24개 본.지점 운영

3. 출연금 현황

(1)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출연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 고
1,000,000	500개소×2,000,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산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사업비	▪ 대상 : 안산시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신용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 사업기간 : 출연일로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 출연금액 : 10억원 ▪ 지원규모 : 100억원 (출연금액의 10배) ▪ 한도액 : 업체당 2천만원 한도 보증서 발급	1,000,000	1,000,000	0	

3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1. 운영 개요

(1)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운영경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2) 필 요 성

○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출연금 현황

(1)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출연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 고
2,020,000	2,020,000,000원×1개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예산서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2,020,000**	1,839,603	180,397	
인건비	직원 급여 및 제수당	**1,327,022**	1,219,362	107,660	
경 비	운영경비 및 시설유지 보수비	**557,978**	485,241	72,737	
성과급	성과급	**30,000**	30,000	0	
사업비	안산시생활과학교실 및	**105,000**	105,000	0	

(3) 출연금 증액 사유

○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인건비 인상

○ 이용자의 안전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4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1. 운영 개요

(1) 지원근거 :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 필 요 성

○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안산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확대 운영

○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각지대 및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2. 출연금 현황

(1) 소요 예산액 (단위 : 천원)

출연금	산출기초	지원기관(단체)	비 고
1,180,000	사업비 및 운영비 1,180,000	(재)안산인재육성재단	※ 예산

(2)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주 요 내 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계		1,180,000	1,150,000	30,000	
사업비	장학사업	975,632	965,852	9,780	
	청소년활동사업	50,000	50,000	0	
	지역인재지원사업	20,000	22,000	△2,000	
인건비	보수 및 퇴직급여 (직원2명)	88,229	62,000	26,229	
그 외 운영비	공공요금및재세, 소모품 등 기본경비	46,139	50,148	△4,009	

(3) 출연금 증액 사유 (전년 대비)

○ 장학사업 확대 추진 : 9,780천원

- 아이디어 공모전 응모자 증가에 따른 장학금 증액 : 5,000천원

☞ 2017년도 공모전 응모자 395명중 30명 장학금 지급

- 저소득층 및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장학금 증액 : 4,780천원

☞ 2017년 대비 이월예산수입액이 25,654천원 감소에 따른 장학사업 예산 부족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인정경력 환산에 따른 인건비 증가 : 26,229천원

3. 검토 및 종합의견

○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18. 1. 1.(시행일)부터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제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함.

○ **세정 전문화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8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운영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시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기본재산 200억원 조성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운영비 성격으로 개별 조례에서 "출연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개별 조례에서 운영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